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국제항공탄소배출량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운영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ICAO가 산출한 전 세계 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배출 증가율 등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도록 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이에,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감축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36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체계적인 상쇄·감축을 위하여 2026년도를 개시연도로 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

나. 검증기관 지정·취소 등(안 제3조, 별표 1)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이행에 관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환경부장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설정

다.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안 제4조, 별표 2)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이행에 관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이 준수해야할 업무기준을 규정

라. 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안 제5조)

검증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규정

마.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제출(안 제6조, 별표 3, 별표 4)

- 1)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배출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작성 기준을 설정
- 2) 제출된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탄소 배출량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보고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출 기한을 규정

바.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 이행 특례(안 제7조, 별표 5)

3년 단위의 이행기간 동안 상쇄의무량의 합이 3천톤 미만이거나 항공기운영자가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첫해를 포함하여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상쇄의무를 면제

사.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제출(안 제8조, 별표 4,

별표 6)

- 1)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 기한을 규정하고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작성 기준을 설정
- 2) 제출된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보고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출 기한을 규정

아.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9조)

환경부장관의 검증기관 지정 권한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0조, 별표 7)

배출량보고서·상쇄의무이행보고서·검증보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탄소 배출 관련 자료 미보관 등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 설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5. 24. ~ 7. 4.) 결과, 000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000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026년도를 계획기간의 개시연도로 하여 2025년 12월 말일까지 최초로 수립하고 이후 5년마다(계획기간 마지막 해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차기 기본계획을 수립
2. 시행계획 수립: 2026년도를 계획기간의 개시연도로 하여 2025년 12월 말일까지 최초로 수립하고 이후 매 계획기간의 말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 동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축효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교육·홍보, 전문가 양성 및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와 관련한 검증심사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3명 이상과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

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시설·장비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업무기준)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업무기준을 말한다.

제5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등) ① 검증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행결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배출량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측정 산식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검증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이하 “배출량보고서”라 한다)를 검증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이행의무자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1. 배출량보고서의 내용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2. 배출량보고서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측정 모니터링 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실제 배출량과 배출량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이하 “배출량 검증보고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배출량보고서 또는 배출량 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수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수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 검증보고서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탄

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이행의무자 식별정보에 관한 사항
2. 검증기관 식별정보에 관한 사항
3. 이행의무자 탄소 배출량에 관한 사항
4.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총량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 항공연료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작성한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보고서를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 검증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상쇄의무의 이행 특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5에 따른 각각의 이행기간 동안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량의 합이 3천톤 미만인 경우
2.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첫해를 포함하여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이행의무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2019년 세계 국

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① 검증기관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보고서”라 한다)를 검증할 때 상쇄의무이행보고서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이행의무자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이하 “상쇄의무검증보고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수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수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량 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3년(2022년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를 말한다)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이행의무자 식별정보에 관한 사항
2. 총 상쇄의무량에 관한 사항
3. 말소된 배출권 총량에 관한 사항

4. 말소된 배출권의 식별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우리나라 상쇄의무이행 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별표 6의 일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이행의무자의 총 상쇄의무량

2. 이행의무자가 말소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총량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검증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2. 법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

속서 16의 제정·개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 등의 자료의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량 산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 산정에 관한 업무

6. 제10조제4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검증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제10조(과태료)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이 시행령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3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7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검증기관이 폐업·해산 등 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제2호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 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제3호	지정취소			
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업	법 제7조				

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4호				
1) 별표 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			
2) 별표 2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별표 2 제12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3항제5호	지정취소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4조 관련)

1.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2. 검증기관은 다른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3. 검증기관은 지정받은 검증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검증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보안 조치를 하고,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검증보고서의 탄소 배출량의 검증오류 정도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되며, [별표 4]에 따른 검증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 가. 해당 연도 탄소 배출량이 50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
 - 나. 해당 연도 탄소 배출량이 50만톤 이하인 경우 100분의 5
6. 소속 임직원 및 검증심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7. 검증심사원 등 검증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평가해야 한다.
8. 검증기관은 이행의무자를 위하여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9.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이며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10.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업무를 시정해야 한다.
11. 적격한 검증심사원으로 검증팀을 배정하고, 이행의무자를 대상으로 연속 6년간 동일한 검증심사원을 검증팀장으로 배정한 경우 이후 3년간은 해당 검증심사원을 검증팀장으로 배정해서는 아니된다.
12. 검증기관은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3. 그 밖에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절차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배출량의 측정 산식(제6조제1항 관련)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5만톤 이상인 항공기운영자

$$CO_2 = \sum_f M_f * FCF_f$$

범례:

CO_2 = 탄소 배출량(톤)

M_f = 사용된 연료(f)의 질량(톤)

FCF_f = 사용된 연료(f)의 연료전환계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트-A 연료, 제트-A1 연료, TS-1 연료 또는 No. 3 제트연료의 경우:
3.16
- 2) 항공가솔린(AvGas) 또는 제트-B 연료의 경우: 3.10

2. 제1호에 따른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자료 누락(Data Gap)은 100분의 5를 넘어서는 안 되며, 누락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배출량 간이 측정 방식(ICAO CORSIA CO₂ ESTIMATION AND REPORTING TOOL)에 따라 측정·반영하여야 한다.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5만톤 미만인 항공기운영자는 제1호 또는 다음의 배출량 측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배출량 간이 측정 방식(ICAO CORSIA CO₂ ESTIMATION AND REPORTING TOOL)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배출량 측정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도주의, 의료 및 소방 목적 등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은 제외한다.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검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관련)

내용	배출량보고서 에 대한 검증보고서	상쇄의무이행 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1. 검증기관명 및 검증팀 구성원의 이름	○	○
2. 검증일정	○	○
3. 검증범위	○	○
4. 공정성 및 이행상충에 대한 평가 결과	○	○
5. 배출량보고서(상쇄의무이행이 관하여는 상쇄 의무이행보고서를 말한다) 검증 기준	○	○
6. 검증기관이 검증에 사용한 교차점검 자료	○	○
7. 리스크분석 결과	○	○
8. 서류검사 및 현장조사 결과	○	○
9. 샘플링 방법	○	
10. 샘플링 결과	○	
11. 모니터링 계획의 유무	○	
12. 모니터링 계획과 배출량보고서의 일치성 평 가 결과	○	
13.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따른 조 치 내용	○	○
14. 정성평가 및 중요도 평가 결과	○	
15. 배출량보고서(상쇄의무이행이 관하여는 상 쇄의무이행보고서를 말한다)의 검증의견 및 결론	○	○
16. 내부심의 결과	○	○
17. 최종 검증의견 및 결론	○	○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이행기간(제7조제1호 관련)

이행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기간
제1차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제2차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제3차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제4차	2030년 1월 1일 ~ 2032년 12월 31일
제5차	2033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국가의 상쇄의무 이행보고 제출기한(제8조제5항 관련)

이행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기간	국가 상쇄의무이행보고서 제출기한
제1차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5년 7월 31일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제2차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8년 7월 31일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제3차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2031년 7월 31일
	2028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9년 1월 1일 ~ 12월 31일	
제4차	2030년 1월 1일 ~ 12월 31일	2034년 7월 31일
	2031년 1월 1일 ~ 12월 31일	
	2032년 1월 1일 ~ 12월 31일	
제5차	2033년 1월 1일 ~ 12월 31일	2037년 7월 31일
	2034년 1월 1일 ~ 12월 31일	
	2035년 1월 1일 ~ 12월 3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 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 제1항제1호	500	750	1000
나.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 제1항제2호	500	750	1000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 제1항제3호	500	750	1000
라.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상쇄의무 이행 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 제1항제4호	500	750	10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 등을 거부한 자	법 제18조 제1항제5호	500	750	1000
바.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 제2항	250	375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연 락 처	(044) 201 - 4291